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2012년 3월 22일 | Vol. 14 No. 4
ISSN 2093-341X

중국 WTO 소송 10년: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KIEP 북경사무소 (hj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ttp://www.kiep.go.kr

차 례

1. 중국의 WTO 소송 10년의 역사
2. 중국이 제소한 소송
3. 중국이 피소된 소송
4. 중국의 대응

주요 내용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지난 10년간 총 22건의 WTO 소송을 치렀음(Dispute Number 기준 31건).

- 2011년 말 현재 22건의 소송 중 8건은 중국이 상대국을 WTO에 제소한 건이며, 14건(Dispute Number 기준 23건)은 중국이 피소된 건임.

▣ 중국의 WTO 소송 사례를 관련 상대 국가별로 살펴보면, 소송 상대국들은 총 5개국(또는 지역)이며, 그 중 미국이 18건에 관련되어 약 82%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EU, 멕시코, 캐나다, 과테말라의 순임.

▣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2년을 첫 시작으로 2004년 1건, 2006년 1건 등 WTO 가입 초기에는 소송 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말 현재 완결된 소송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승소한 것이 3건, 패소한 것이 3건, 관련국들이 판결 전 합의에 이른 것이 4건임. 이 중 합의에 이른 4건은 중국이 피소당한 소송으로, 중국이 판결에 이르기 전 협의 과정에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은 국내 각종 법규를 WTO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무역분쟁 전담 부처를 상무부에 설립하고 무역분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WTO 소송에 대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나, WTO 분쟁 해결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함.

- 해외시장 비중이 높은 중국의 대기업들은 WTO 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며, WTO 관련 연구기관이 가장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를 위한 가치 있는 건의나 제안이 부족함.

1. 중국의 WTO 소송 10년의 역사

■ 2011년 말 현재 중국은 사안을 기준으로 총 22건의 WTO 소송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 8건은 중국이 제소한 소송이며 14건(Dispute Number 기준 23건)은 중국이 피소된 소송임.

■ 국가별로 미국이 18건에 관련돼 중국 관련 WTO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임을 알 수 있음.

- 중국이 제소한 소송 중에는 미국 상대 6건, EU 상대 2건임.
- 중국이 피소된 소송 역시 미국이 1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2년을 첫 시작으로 2004년 1건, 2006년 1건 등 WTO 가입 초기에는 소송 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1. 시기별 중국의 WTO 소송 건수(사안 기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제소	1	0	0	0	0	1	1	3	1	1	8
피소	0	0	1	0	1	3	2	1	4	2	14
합계	1	0	1	0	1	4	3	4	5	3	22

자료 : WTO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2011년 말 현재, 완결된 소송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승소한 것이 3건, 패소한 것이 3건, 관련국들이 판결 전 합의에 이른 것이 4건임.

- 이 중 합의에 이른 4건의 소송은 중국이 피소당한 소송으로, 중국이 판결에 이르기 전 협의 과정에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이하에서는 중국이 제소한 소송과 중국이 피소된 소송으로 나누어 각 소송의 배경과 경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함.

표 2. 중국의 완결된 WTO 소송

DS No.	소송의 사안	제소/피소	결과
252	미국의 철강 산업 보호조치	제소	승소
309	중국의 반도체제품에 대한 부가가치 환급조치	피소	합의
339/340/342	중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율	피소	패소
358/359	중국의 산업세제 우대정책과 보조금 정책	피소	합의
362	중국의 지식재산권	피소	패소
368	미국의 중국산 아트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제소	승소
372/373/378	중국의 금융정보서비스 관리규정	피소	합의
387/388/390	중국의 수출보조금	피소	합의
392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제소	승소
399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치	제소	패소

자료: WTO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2. 중국이 제소한 소송

가. 미국의 자국 철강산업 보호조치(DS252)

■ 소송 배경

- 2001년 6월 미국 부시 대통령은 철강업계의 요구에 따라 무역법 201조에 의거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함.
- 2001년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총 16가지 항목에서 수입 철강제품이 미국기업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함.
- 2002년 3월 부시 대통령은 10개 철강제품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고, 향후 3년 동안 최고 30%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02년 3월 26일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이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조치를 WTO에 제소함.

■ 소송 경과

- 2002년 3월 26일 중국 등 6개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함.
- 2002년 4월 11, 12일 중국을 포함한 6개국과 미국은 WTO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함.
- 2002년 7월 25일 협의에서 각 측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고 패널을 구성함.

- 2003년 7월 11일 패널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함.
- 2003년 8월 11일 미국은 패널의 판정에 대해 상소하였으며, 중국도 이에 따라 상소함.
- 2003년 11월 10일 상소기구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함.
- 2003년 12월 4일 부시 대통령은 12월 5일부로 철강산업 보호조치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함.

표 3. 중국의 WTO 제소 사안(2001년 12월~2011년 12월)

DS No.	제소일자	상대국	사안
252	2002년 3월 26일	미국	철강산업 보호조치
368	2007년 9월 14일	미국	아트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
379	2008년 9월 19일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복 부과
392	2009년 4월 17일	미국	가금류 수입제한조치
397	2009년 7월 31일	EU	고정용 철물제품 반덤핑 조치
399	2009년 9월 14일	미국	타이어 특별세이프 가드
405	2010년 2월 4일	EU	가죽구두 반덤핑
422	2011년 2월 28일	미국	냉동새우 및 캔포장새우 반덤핑

자료: WTO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나. 미국의 중국산 아트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DS368)

■ 소송 배경

- 2006년 10월 31일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제지업체인 뉴페이지(Newpage) 그룹은 "중국정부가 자국 제지업체들에 세제해택과 채무연장, 저금리대출 등의 지원책으로 수출단가를 낮추도록 도왔다. … 이로 인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산 아트지 수입은 전년대비 170%나 증가했다"라며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산 아트지에 대해 반덤핑 및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함.
- 2006년 11월부터 미국은 중국산 아트지에 대해 반덤핑 및 불법 보조금 조사를 착수함.
- 2006년 12월 1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트지가 자국의 관련 산업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예비판정에서 밝히고, 같은 날 상무부도 30일 동안 중국에 상계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07년 3월 30일 미국은 중국산 아트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2007년 9월 14일 중국은 이 문제를 WTO에 정식으로 제소함.

■ 소송 경과

- 2007년 9월 14일 중국이 WTO에 제소함.
- 2007년 10월 18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아트지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에 대해 21.12~99.65%의 반덤핑 관세와 7.4~44.2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함.
- 2007년 11월 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 상무부가 중국산 아트지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안을 철회할 것을 최종 판정함.

다.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복부과 조치(DS379)

■ 소송 배경

- 1984년 미국은 중국처럼 비시장경제 지위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2007년 3월 이전까지는 중국에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취하지 않음.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둘러싼 통상 분쟁이 격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복부과 조치가 크게 확대됨.
- 본 분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미국이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중국산 4개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연쇄적으로 부과한 데서 비롯함.
  - ㅇ 2008년 5월 30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용접강관에 대해 85.55%의 반덤핑 관세와 29.57~615.92%에 이르는 상계관세를 부과함.
  - ㅇ 2008년 6월 16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각강관에 대해 264.64%의 반덤핑 관세와 15.28~200.58%의 상계관세를 부과함.
  - ㅇ 2008년 6월 19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우븐색(woven sacks)에 대해 91.73%의 반덤핑 관세와 226.85%의 상계관세를 부과함.
  - ㅇ 2008년 9월 4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비도로용 타이어와 관련해 응소한 기업에는 0~19.15%의 반덤핑 관세와 2.45~14%의 상계관세를, 미응소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210.48%와 5.62%의 징벌성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함.
- 2008년 9월 19일 중국은 미국이 동일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WTO에 제소함.

■ 소송 경과

- 2008년 9월 19일 중국은 WTO에 정식으로 제소함.
- 2009년 1월 20일 패널 설치
- 2009년 3월 4일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 구성

- 2010년 10월 22일 패널은 중국의 제소내용을 기각하고, 중국에 대해 패소 판정을 내림.
- 2010년 12월 1일 중국은 다시 WTO 분쟁해결기구에 상소함.
- 2011년 3월 11일 WTO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결을 뒤집고 중국에 승소 판정을 내림.
- 2011년 3월 25일 WTO 분쟁해결기구는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함.
- 2011년 4월 21일 미국은 WTO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관련 사항을 조치하겠다고 밝힘.
- 2011년 7월 5일 중·미 양국은 판결 이행기간을 11개월로 정하는 데 합의하고, 이에 따른 이행 마감기한은 2012년 2월 25일로 정함.

라.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DS392)

■ 소송 배경

- 중국과 미국은 2004년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이유로 상호간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는데, 중국은 곧 금지조치를 해제한 반면 미국은 이를 계속 유지함.
- 중국은 이를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적 보호주의라고 비판하고, 미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해 미국 공중의 보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맞서왔음.
- 2007년부터 미국은 연례국회배당금 및 일련의 관련 조치에 근거하여 중국산 가금류의 대미 수출을 막아왔는데, 2009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09년 종합세출법안의 제727조항에 따르면 중국 가금류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에도 의회가 승인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
- 2009년 4월 17일 중국은 미국의 제727조항을 WTO에 제소함.

■ 소송 경과

- 2009년 4월 17일 중국은 WTO에 제소함.
- 2009년 7월 31일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을 구성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함.
- 2010년 9월 25일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 국제 무역규정에 어긋나며 중국경제에 손실을 끼쳤다고 발표하고, 해당 조치가 비과학적이며 불공평하다고도 지적함. 또한 미국이 다른 WTO 회원국과 달리 유독 중국산 가금류에만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힘.
- 2010년 10월 25일 패널의 보고서가 정식으로 통과함.
- 미국은 이에 따라 문제가 된 법조항을 수정함.

마. EU의 중국산 고정용 철물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DS397)

■ 소송 배경

- 고정용 철물제품에는 볼트류, 너트류, 나사못 등이 포함되는데,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고정용 철물제품 생산국이며 유럽은 중국의 주요 시장임.
- 유럽 각국의 관련 기업들은 중국산 고정용 철물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EU 집행위원회에 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
- 2007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고정용 철물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착수하고, 2009년 1월 중국산 고정용 철물제품에 대해 5년간 26.5~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2009년 7월 31일 중국은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함.

■ 소송 경과

- 2009년 7월 31일 중국은 WTO에 정식으로 제소함.
- 2009년 10월 패널 구성
- 2010년 12월 3일 패널은 중국에 승소판정을 내리고 EU에 관련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
- 2011년 3월 25일 EU는 패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기구에 상소함.
- 2011년 3월 30일 중국도 이어서 상소기구에 상소함.
- 2011년 7월 15일 WTO 상소기구는 EU가 중국산 고정용 철물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WTO 무역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수출업체들을 개별기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최종 판결함.
- 2011년 7월 28일 분쟁해결기구는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함.
- 현재 중국과 EU는 WTO 판결의 합리적 이행기간에 대해 의견을 조율 중임.

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DS399)

■ 소송 배경

- 2009년 4월 20일 타이어 노조가 소속된 미국 철강노조는 중국의 대미 타이어 수출이 급증하여 이로 인해 국내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수입제한을 강력히 요구, 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함.
- 2009년 9월 11일 오바마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421조를 발동하여 중국산 승용차 및 경화물차

타이어에 대해 기본관세율 4%에 3년 동안 연차적으로 35%, 30%, 25%의 징벌성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

-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란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에 명시된 조항으로 회원국들이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종전보다 손쉽게 수입제한 등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421조 발동에는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 미국은 중국이 아무런 불공정무역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2009년 9월 14일 중국은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함.

■ 소송 경과

- 2009년 9월 14일 중국은 WTO에 정식으로 제소함.
- 2009년 9월 21일 중국은 WTO에 패널 구성을 요청함.
- 2010년 1월 19일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 구성
- 2010년 12월 13일 패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WTO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중국의 제소를 기각함.
- 2011년 5월 24일 중국은 상소기구에 상소함.
- 2011년 9월 5일 상소기구는 최종보고서에서 패널의 판결을 지지하며, 중국이 종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을 기각하고 미국이 3년간 징벌성 관세를 부과한 것이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정함.

사. EU의 중국산 가죽구두에 대한 반덤핑 조치(DS405)

■ 소송 배경

- EU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가죽구두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오랫동안 취해옴.
- EU는 중국산 가죽구두에 대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여 년간 수입쿼터 규제를 취해왔음.
- 2005년 이후 쿼터는 철폐했으나, 철폐 직후 또 다시 중국산 가죽구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착수하여 2006년 10월에는 중국산 가죽구두에 대해 2년간 16.5%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함.
- 반덤핑 관세 부과기한인 2008년 10월 일몰재심[1]을 발하여 2009년 12월 EU는 또 다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1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함.
- 이에 2010년 2월 4일 중국은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함.

1) 일몰재심이란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 국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WTO의 규정으로 회원국들의 의무 준수사항임.

■ 소송 경과

- 2010년 2월 4일 중국은 WTO에 정식으로 제소함.
- 2011년 3월 말 이후 추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중국산 가죽구두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는 사실상 중지됨.
- 2011년 10월 28일 WTO는 EU의 반덤핑 기본조례 제95조(혹은 9-5조)가 WTO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따라서 EU가 반덤핑 조사 중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함.
- 또한 EU가 개별 상품 공급자가 아닌 특정 국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아. 미국의 중국산 냉동새우 및 캔포장새우에 대한 반덤핑 조치(DS422)

■ 소송 배경

- 미국은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여 중국산 냉동새우 및 캔포장새우에 대한 반덤핑 마진을 계산함.
- 제로잉 방식이란 반덤핑 마진 계산 시 품목별로 마이너스로 계산된 부분에 대해 零(0)으로 처리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령 국내시장에서 1,000원에 파는 물건을 해외 수출시장에서 한번은 900원에 팔고, 한번은 1,100원에 팔았을 때 '제로잉 방식'에서는 1,100원에 판 것은 무시하고 900원에 판 것만을 계산에 넣어 덤핑 마진을 계산함.
- 따라서 '제로잉 방식'은 반덤핑 마진을 부풀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2004년 12월 8일 미국은 중국산 냉동새우 및 캔포장새우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고함. 최종 판정결과 최고 112.81%에 이르는 높은 반덤핑 관세부과가 결정되었고 중국의 관련 기업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됨.
- 2010년 12월 28일 WTO의 관련 판결에 따라 미국은 반덤핑 세율 결정 시 제로잉 산정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미국은 여전히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2011년 2월 28일 중국은 이 문제를 WTO에 정식으로 제소함.

■ 소송 경과

- 2011년 7월 22일 중국은 2009년 11월에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와 그 부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 역시 제로잉 방식이 적용되었다며 이에 대해 WTO에 제소함.
- 2011년 10월 13일 중국은 미국의 제로잉 산정방식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을 구성할 것을 요청함.
- 2011년 10월 25일 WTO 분쟁해결기구는 패널 구성 완료

3. 중국이 피소된 소송

가. 미국: 중국 반도체제품 부가가치세 환급조치에 대한 제소(DS309)

■ 소송 배경

- 중국은 당시 국내외 모든 반도체 업체들에 1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에서 반도체를 디자인하거나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14%를 환급해 결과적으로 3%의 부가가치세만을 적용함.
- 미국 반도체 제조업계는 중국의 이러한 불평등한 과세로 인해 반도체 생산공장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함.
- 2004년 3월 18일 미국은 중국이 수입 반도체제품에 대해 불평등한 과세를 부과한 것은 WTO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WTO에 제소함.

■ 소송 경과

- 2004년 3월 26일 미국과 중국 협의 시작
- 미국과 중국 양국은 5월 26일, 6월 15일, 7월 1~2일 세 번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며, 주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함.
- 2004년 7월 14일 양국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 2005년 4월 1일 이후 중국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치를 중단함.
- 2005년 10월 6일 양국은 분쟁해결기구에 상호간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힘.

나. 미국·EU와 캐나다: 중국의 자동차부품 관세율에 대해 제소(DS339/340/342)

■ 소송 배경

- 2005년부터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중국산 부품을 적어도 4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해 완성차 수입관세율을 적용함.
- 중국이 수입 자동차부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평균 10%이며, 완성차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평균 25%이므로 중국산 부품을 40%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완성차에 들어가는 수입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은 10%가 아닌 25%가 됨.

■ 소송 경과

- 2006년 3월 30일 미국과 EU는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한 관련 조치들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WTO에 제소함.
- 2006년 4월 13일 캐나다도 같은 문제로 WTO에 제소함.
- 2006년 9월 15일 당사국 간 협의가 원만치 않자 미국, EU 및 캐나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함.
- 2007년 1월 9일 패널 구성 완료
- 2008년 7월 18일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입 관련 조치들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중국의 패소를 판결함.
- 2008년 9월 15일 중국은 상소기구에 상소함.
- 2008년 12월 15일 상소기구는 패널의 의견을 지지하며 중국의 상소를 기각함.
- 2009년 8월 28일 중국은 9월 1일부터 자동차부품의 수입관세를 10%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함.

다. 미국, 멕시코: 중국의 산업세제 우대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제소(DS358/359)

■ 소송 배경

- 중국은 일정한 수출실적 기준을 충족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감세 및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면제, 우대 대출금리 적용, 사회보장 분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
- 또한 자국 설비 및 부품을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혜택을 제공함.
- 미국은 △ 중국이 대미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철강, IT 제품, 목재, 기타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해 국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으며 △ 중국기업들에 대해 자국 설비 및 부품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해 수입품 구매를 차단하였다며,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에 이름.

■ 소송 경과

- 2007년 2월 2일 미국은 WTO에 정식으로 제소함.
- 2007년 2월 3일 중국정부는 양국이 이미 의견을 조율 중이었음에도 이를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함.
- 2007년 2월 26일 멕시코도 같은 문제로 중국을 WTO에 정식으로 제소함.
- 2007년 3월 20일 첫 번째 협의회 개최

- 2007년 6월 22일 두 번째 협의회 진행
- 2007년 8월 31일 분쟁해결기구는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한 패널을 구성
- 2007년 11월 29일 중국, 미국, 멕시코 세 나라는 양해각서에 서명함.

표 4. 중국의 WTO 피소 사안(2001년 12월~2011년 12월)

DS No.	제소일자	제소국	사안
309	2004년 03월 18일	미국	반도체제품 부가가치세 환급조치
339,340,342	2006년 03월 30일 2006년 04월 13일	미국, EU, 캐나다	자동차부품 관세율
358,359	2007년 02월 02일	미국, 멕시코	산업 세제 우대정책 및 보조금
362	2007년 04월 10일	미국	지식재산권 문제
363	2007년 04월 10일	미국	출판물, 오락영상물
372,373,378	2008년 03월 03일 2008년 06월 20일	미국, EU, 캐나다	금융정보서비스 관리규정
387,388,390	2008년 12월 19일 2009년 01월 19일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수출보조금 문제
394,395,398	2009년 06월 23일 2009년 08월 21일	미국, EU, 멕시코	희토류 수출제한조치
407	2010년 05월 07일	EU	고정용 철물제품 반덤핑 조치
413	2010년 09월 15일	미국	전자결제시장 개방
414	2010년 09월 15일	미국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419	2010년 12월 22일	미국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보조금
425	2011년 07월 25일	EU	엑스레이 안전검사설비 반덤핑 판정
427	2011년 09월 20일	미국	닭고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료: WTO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라. 미국: 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소(DS362)

■ 소송 배경

- 중국의 「저작권법」 4조 1항은 출판·전송이 금지된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중국의 저작물 사전심사제도로 인해 외국저작물 중 심사를 거치지 못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음. 즉 수입심사를 거치지 않은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음.

■ 소송 경과

- 2007년 4월 10일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산 책, 음반 및 영화에 대한 높은 무역장벽 문제 등 두 건에 대해 WTO에 제소, 양자 협의를 요구함.

- 2007년 6월 7일 미국과 중국 양국의 협의 진행
- 2007년 8월 13일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 요구
- 2007년 9월 25일 패널 설치
- 2009년 1월 26일 패널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은 「저작권법」 제4조 1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함.
- 2009년 3월 20일 WTO는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함.
- 2009년 4월 15일 중국은 WTO의 판결에 승복한다고 밝힘.
- 2009년 6월 29일 미국과 중국 양국은 결과 이행에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그 시한을 2010년 3월 20일로 정함.
- 2010년 3월 19일 중국은 관련된 「저작권법」 을 수정함.

마. 미국: 중국의 출판물, 오락영상물 등에 대해 제소(DS363)

■ 소송 배경

- 본 소송은 중국의 WTO 가입 후 첫 번째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소이며 중국이 WTO 가입 당시 승인했던 서비스 무역 개방과 연관되는 문제임.
- 중국은 출판물이나 오락 영상물 등을 국영기업만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한을 둠.
-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입출판물의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
- 수입출판물의 유통 서비스는 오직 국영기업만이 할 수 있고, 승인된 독자들에게만 유통되도록 규제함.
- 수입 영화는 2개 국영기업으로 유통 채널을 제한함.
- 미국은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의 수입권한과 유통 서비스 권리를 제한하며 외국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무역권한과 유통 서비스에 대해 WTO에 제소함.

■ 소송 경과

- 2007년 4월 10일 미국은 중국의 출판물과 영상오락물 등의 무역권과 유통권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함.
- 2007년 6월 5일과 6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007년 10월 10일 미국은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1차 거부함.
- 2007년 11월 27일 전문가 패널 구성 완료. 호주, EU, 캐나다, 일본, 한국, 대만은 제3자로 패널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출함.
- 2009년 6월 23일 최종보고서 발표

- 2009년 8월 12일 패널의 최종보고서는 미국의 입장을 대부분 지지. 중국이 외국의 출판물과 영상 오락물에 대해 자국 시장에 진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GATS의 규정과 중국의 WTO 가입 당시의 승인사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 2009년 9월 22일 중국은 상소기구에 상소함.
- 2009년 10월 5일 미국정부도 상소함.
- 2009년 12월 21일 WTO 분쟁해결기구는 상소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상소기관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최종보고서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패널의 평결을 지지함.
- 현재 판결 집행 중이며, 미국과 중국 양국은 2011년 3월 19일까지 14개월의 이행기간에 합의한 상태임.

바. 미국, 유럽, 캐나다: 중국의 금융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제소 (DS372/373/378)

■ 소송 배경

- 중국은 2006년 9월 중국 내 외국 통신사는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서만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함.
- 이 조치에 따라 블룸버그 통신이나 다우존스, 로이터 통신 등 외국 통신사들은 중국 내에서 고객들에게 직접 금융정보를 배포할 수가 없음.

■ 소송 경과

- 2008년 3월 3일 미국과 EU는 각각 중국의 금융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WTO에 제소함.
- 2008년 6월 20일 캐나다도 같은 문제를 WTO에 제소함.
- 2008년 12월 4일 각 소송 참가자들은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함.
- 2009년 6월 이전에 중국은 이행조치를 완료함.

사.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중국의 수출보조금 문제를 제소 (DS387/388/390)

■ 소송 배경

- 중국정부는 자국 상품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판매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부서

에서 여러 가지 수출보조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수출보조금 프로그램에는 수출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 업체들에 대한 특혜융자, 낮은 요율의 보험료, 신상품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유명상품 수출보조금 프로그램이 유명상품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중국제품(가전, 의류, 경공업품, 농산품, 식품, 금속제품, 화공품,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소송 경과

- 2008년 12월 19일 미국과 멕시코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유명상품 수출보조금 프로그램을 WTO에 제소함.
- 2009년 1월 19일 과테말라도 같은 문제를 WTO에 제소함.
- 2009년 2월 5~6일 소송 당사국 간 협의 진행
- 2009년 12월 18일 중국은 문제가 된 수출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아. 미국, EU, 멕시코: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제소 (DS394/395/398)

■ 소송 배경

- 중국은 세계 희토류 사용량의 90% 이상을 생산하는데, 최근 들어 희토류를 국가전략자원으로 규정하고 환경보호와 난개발 등의 명분을 들어 생산, 유통,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소송 경과

- 2009년 6월 23일 미국과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수출관세나 수출쿼터의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함.
- 2009년 8월 21일 멕시코 역시 같은 문제로 제소
- 2009년 7월과 9월에 소송 당사국들은 두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함.
- 2009년 12월 21일 WTO는 패널을 설치하고 조사를 시작함.
- 2011년 2월 18일 전문가 패널 예비보고서 제출
- 2011년 4월 1일 전문가 패널 최종보고서 제출
- 2011년 7월 5일 최종보고서 승인

- 2011년 8월 31일 중국은 상소기구에 상소함.
- 2011년 9월 6일 미국 역시 상소함.

자. EU: 중국의 고정용 철물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에 대해 제소(DS407)

■ 소송 배경

- 나사류, 볼트류, 너트류 등 고정용 철물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EU의 무역 분쟁은 2009년 1월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고정용 철물제품에 대해 26.5~85%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악화일로가 됨.
- 2009년 12월 28일 중국은 유럽산 고정용 철물제품에 대해 16.8~24.6%의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소송 경과

- 2010년 5월 7일 EU는 중국이 유럽산 고정용 철물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에 제소함.
- 2010년 6월 29일 중국정부는 6.1~26%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발표함.

차. 미국: 중국의 전자결제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제소(DS413)

■ 소송 배경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해외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모두 철폐하겠다고 약속함.
- 하지만 중국정부는 여전히 마스터, 비자,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외국 신용카드 업체들이 중국의 독점 카드사인 유니언페이를 통해야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정부가 중국 전자결제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신용카드 업체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전자결제시스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특정한 제약과 요구사항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함.

■ 소송 경과

- 2010년 9월 15일 미국 WTO에 제소

- 2010년 10월 미·중 양국은 협상에 돌입함.
- 2011년 2월 11일 미국은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함.
- 2011년 3월 25일 패널 설치. 호주, EU, 과테말라, 일본, 한국은 제3자로 패널에 의견을 제출함.
- 2011년 7월 4일 패널 구성 완료

카. 미국: 중국의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제소(DS414)

■ 소송 배경

- 2009년 들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놓고 중·미 양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됨.
- 2009년 미국의 전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60% 이상이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이에 대해 중국 역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로 맞서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2009년 12월 10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러시아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내린다고 발표함.
- 미국산의 경우 10.7~25%의 반덤핑 관세, 11.7~12.0%의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러시아산은 4.6~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2010년 4월 15일 중국 상무부 최종판정 발표

■ 소송 경과

- 2010년 9월 15일 미국 WTO에 제소
- 2010년 11월 중·미 양국 협의 진행
- 2011년 2월 11일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 요구
- 2011년 3월 25일 패널 설치
- 2011년 9월 15~16일 패널은 제1차 공청회 개최

타. 미국: 중국의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보조금 조치를 제소(DS419)

■ 소송 배경

- 2010년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철강노동자연합회의 요구에 따라 중국정부의 풍력발전설비 생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조치 조사에 착수함.

-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정부가 자국의 풍력발전설비 제조기업들에 자국의 부품만을 사용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외국기업들의 부품수출을 차단한다고 밝히고, 이는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함.
- 중국정부는 보조금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정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소송 경과

- 2010년 12월 22일 미국은 철강노조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함.
- 2011년 2월 16일 미국과 중국 양국은 협의를 진행함.

파. EU: 중국의 엑스레이 안전검사설비에 대한 반덤핑 판정에 대해 제소(DS425)

■ 소송 배경

- 2009년 10월 23일 중국정부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EU산 엑스레이 안전검사설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2010년 6월 9일 이 안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발표함.
- 2011년 1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2011년 제1호 공고를 통해 EU에서 수입된 엑스레이 안전검사설비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결을 발표함.
- 상무부는 EU산 엑스레이 안전검사설비에 덤핑 사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덤핑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EU산 엑스레이 안점검사설비에 대해 2011년 1월 23일부터 5년간 33.5~71.8%의 반덤핑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함.
- 2011년 7월 25일 EU는 중국의 유럽산 엑스레이 안전검사설비에 대한 반덤핑 판정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함.
- 2011년 9월 19일 협의 진행

하. 미국: 중국의 닭고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판정에 대해 제소(DS427)

■ 소송 배경

- 2009년 10월 중국정부는 미국산 닭고기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적정가격 이하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

다며 조사를 시작, 2010년 8월에 4~30.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이어 9월에는 50.3~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2011년 9월 20일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적절치 않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내렸다며 이를 WTO에 제소함.

■ 소송 경과

- 2011년 9월 20일 미국은 중국이 주관적 증거조사 없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찾았고 덤핑마진과 보조금 비율을 잘못 계산했으며 투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WTO에 제소함.

4. 중국의 대응

■ 중국은 지난 10년간 WTO 소송을 통해 풍부한 소송 경험을 쌓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WTO 분쟁해결기구 내에서 발언권도 강화할 수 있었음.

- 중국정부는 전문적으로 무역분쟁을 전담하는 처(處) 두 곳을 설립함.
- WTO에 17명의 전문가 패널을 추천함.
- 신흥경제지역과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함.
- 19만여 건에 달하는 지방법규, 지방규정, 기타 지방조치들을 WTO의 관련 규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완료함.

■ 하지만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하는 데는 선진국들과 여전히 격차가 존재함.

- 해외시장 비중이 높은 중국 대기업들은 아직도 WTO 규정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부족함.
  - ㅇ 가령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의 WTO 규정 위반을 발견하여 이를 WTO에 제소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행위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EU의 대기업들과 차이가 남.
- 중국은 세계에서 WTO 연구기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나 자금이나 인력, 진정성 있는 WTO 연구, 기업과 정부를 위한 가치 있는 건의나 제안 등은 부족한 상태임.
- 중국 내에는 WTO 분쟁 소송을 전담할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없어 국외 변호사에 의존하고 있음.

■ 공정하고 중립적인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국제무역 분야의 전문가가 규정에 따라 무역분쟁을 판결하는 것은 본래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임.

- 중국은 WTO 분쟁해결기구를 보호하고 존중하여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참여하는 정도와 스스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중국이 WTO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함.

<참고자료>

国际商报. 2011.「入世10年中国主动利用WTO争端解决机制述评」. (12. 6)

___. 2011.「中国主动起诉8起案件, 被诉14起」. (12. 10)

___. 2011.「学会维护规制更要善用规制」. (12. 10)

WTO분쟁조정기구 소송리스트,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자료 정리: 중국 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황문우 (economist@hotmail.co.kr)